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【서상열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743)】

가. 발 의 자 : 서상열 의원(찬성자 55명)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【김춘곤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774)】

가.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(찬성자 44명)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【이성배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803)】

가.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(찬성자 49명)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【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859)】

가. 발 의 자 : 강석주 의원 외 29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【서상열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743)】

가. 제안이유

-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지역구 내 시립체육시설과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
- 그러나 지역 주민 단체들이 마을 행사 등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시 에 별도 이용료 감면을 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
- 이에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
 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

【김춘곤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774)】

가. 제안이유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%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 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도록(2020.6.) 권고하고 있음.

○ 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(풋살구장, 다목적구장, 인라인하키장, 보조경기장, 축구장, 보조체육관, 다목적실, 간이야구장)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%~90%에서 일자별로 전액반환, 10%, 30%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(풋살구장 등, 규칙으로 정함 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 정함. (안 제11조제2항제1호)

【이성배 의원 발의안(의안번호 803)】

가. 제안이유

- 잠실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다수의 경기·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,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마땅한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임.
- 이에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요금감면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1바목 신설)
-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의2호사목 신설)

【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859)】

가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,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.
-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(4명)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 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)
-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함. (안 제10조)

3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」은 서상열의원, 김춘곤 의원, 이성배 의원, 강석주 의원으로 총 4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음
- 서상열 의원안은 안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과 별표5 상업사용료, 김 춘곤 의원안은 안 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규정, 이성배 의원안은 안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규정, 강석주 의원안은 안 제9조(입장료)와 안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.

〈의원발의안 개정사항〉

서상열(안)	김춘곤(안)	이성배(안)	강석주(안)
(안 제10조)	(안 제11조)	(안 제10조)	(안 제9조)
▶사용료 감면	▶사용료의 반환	▶사용료 감면	▶입장료
(별표5)			(안 제10조)
▶상업사용료			▶사용료 감면

나. 조문별 검토

(1)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입장료 면제 등 (안 제9조·10조)

- 강석주 의원(안)은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(4명)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최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는 개인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%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(2023.3.27.) 중임.
-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 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에 가 족 친화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.
- 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을 수혜받는 타시도와 달리 출산 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혜택을 주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과 같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본인을 포함한 4명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감면혜택의 한계가 발생함.
- 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본인 포함 4명에서 전원으로 인원수의 제한을 풀고, 입장료를 현행 50%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.

- 또한 안 제10조에서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 강료를 50% 감액하는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함.
- 이는 감액율은 수정하지 않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본인을 포함 한 4명에서 가족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(2) 지역 직능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 (안 10조)

- 서상열 의원(안)은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, '별표5 상업사용료'에서 물품 판매부스 1개당 가격이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였으나 3만 5천원으로 낮추고자 발의된 것임.
-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'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 단체'를 감면 주체로 하고 있으나 직능단체와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'해당 시설 자치구소재 단체'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「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르면 '영리를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후보의 지지·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것'으로 정의하고 있음.
- 또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
 행사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목적은 지나치게

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'마을축제,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 으로 개최하는 행사'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 면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
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. ~ 마. (생 략)	5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 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	바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 단체(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 로 한정)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을 위하여 마을축제,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

- 개정안은 '별표 5의 상업사용료'(제7조제1항 관련)는 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 1개 당 최 소가격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낮추고 있음.
-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낮추는 것은 지역 주민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되나, 합리적인 산출조 사나 감액 근거가 부족해 보임. 따라서 [별표5] 상업사용료는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림.

(3) 소음교통체증 발생 지역의 사용료 감액 (안 10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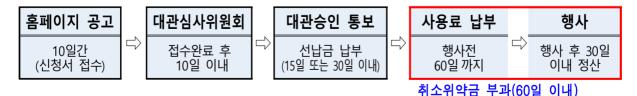
- 이성배 의원(안)은 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혜택을 주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임.
-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의 경우,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소음과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"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" (2022.8.~2023.3.8.)을 수행하였으며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 장과 잠실 주·보조경기장 운영 시 주변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조사하고 소음저감방안과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함.
- 야구장 프로야구 경기시 소음관리기준 60db를 초과하는 소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용역 기간 중 소음영향이 가장 큰 주 경기장의 IU콘서트 당시, 최대 소음피해는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.
- 장기적으로는 방음벽 등 소음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소음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 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음 및 교 통체증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으로 기대됨.

다만 피해 주민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체육시설 일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.

(4)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(안 제11조)

- 김춘곤 의원(안)은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-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「체육시설법」상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사용 방식에 구분없이 위약금 상한은 총액의 10%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, 기간 차등 또는 단일 위약금제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해 주고, 예약대기제 확대 등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(2020.6.8.)
- 사용료 반환이 적용되는 전용사용 시설은 대규모 문화행사와 경기를 위한 시설과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.
-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은 대관심사를 거쳐 허가승인을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하고,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서비스예약, 전화예약, 자체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1달 이내 단위로 예약을 실시하고 있음.

〈시설 대관절차〉



※표준 대관절차 3~4개월 소요

〈시립체육시설 목적별 구분〉

[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 시설 : 7개소]

- ▶ (잠실종합운동장) 주경기장·보조경기장·실내체육관,
- ▶ 목동주경기장, 서울월드컵경기장, 고척돔야구장, 장충체육관

[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: 12개소]

- ▶ (잠실종합운동장)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, 인라인하키장, 풋살구장
- ▶ (**서울월드컵경기장**) 보조경기장, 풋살구장
- ▶ (고척돔) 축구장, 풋살구장 / (목동운동장) 다목적구장
- ▶ (**효창운동장**) 축구장 / (**장충체육관**) 보조체육관, 다목적실1·2
- 이러한 시설의 전용사용 및 부속·상업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및 취소 위약금은 안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전용사용료는 60일 전 취소할 경우 30%, 10일 전 취소는 90%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부속시설 사용료는 20일 전 취소할 경우 10%에서 1일 전 취소할 경우 50%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.

〈조례상 사용료 반환기준〉

전용사용료		부속시설사용료, 월드컵 풋살구장	
반환기준일	취소 위약금	반환기준일	취소 위약금
60일전	30%	20일전	10%
30일전	50%	15일전	20%
20일전	70%	10일전	30%
10일전	90%	5일전	40%
		1일전	50%

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은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과 시민 이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특성이 다름에도 구분 없이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, 최소 취소위약금이 30%로 규정되어 일반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 따라서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 7개소는 행사유치와 개최를 위한 절차가 통상적으로 3~6개월이 되는 특성상 취소시의 피해가 크므로 이는 현재 조례규정을 유지하고, 시민이용 체육시설 12개소 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, 신청당일과 10일 전까지 전 액 반환하고 5일 전 10분의 9, 1일 전 10분의 7 범위에서 반환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집행부 검토의견

의안번호 074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제 안 자	제안일	실자	소관 상임위
발 의	서상열 의원 (도시계획균형위원회)	2023.5	5.25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	〈제안이유〉○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의 행사 개최 시 일부 이용료를 감면해 지역기반 공동체 행사 활성화			
주요내용	 〈주요요지〉 ○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 ○ 별표 5의 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의 금액란 중 "50,000~65,000"을 "35,000~65,000"으로 변경 			
추진경과	○ 2023. 5.25. 서상열 의원 발의 - (찬성)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 의원 등(55명)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O) / 부결() / 보류()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 ○ 지역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○ 개정안의 '지역'의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'공공목적'이 포괄적이므로 '지역'을 '체육시설이 소재한 자치구'로 한정하고, '공공목적'을 '마을축제, 문화행사 등의 공공목적 행사'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, ○ 또한, 해당 상업사용료 최소 부과금액을 50,000원에서 35,000원으로 낮춤으로서 특별한 사유·조건없이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, 취지에 맞게 지역 직능단체, 주민단체에 적용되도록 제한 필요 ○ 조례개정 수정안 ●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			
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			

	의원발의 조례개정안	수정안	
	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
	1.~ 4.(생략)	가공료를 심인할 수 있다. 1.~ 4.(생략)	
	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	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	
	가.~마.(생략)	가.~마.(생략)	
	바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 가	바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(해당	
	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<u>공공</u>	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) 가	
	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(신설)	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<u>마을</u>	
	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	축제,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	
		<u>개최하는 행사, 이 경우 별표 5의</u> 상업사용료에 대해 100분의 30의	
		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.(신설)	
		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	
	[별표 5] 상업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	[별표 5] 상업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	
	(1일, 단위 : 원)	(1일, 단위 : 원)	
	구 분 금 액	구 분 금 액	
	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<u>35,000~65,000</u>	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<u>50,000~65,000</u>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 팀장 주소연(☎ 2133-	-2677) 담당 김병모(☎ 2133-2678)	

의안번호 077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
	김춘곤 의원 (도시안전건설위원회)	2023.5.3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 〈제안이유〉 ○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%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도록 권고(2020.6월)하고 있음 ○ 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(풋살구장, 다목적구장, 인라인하키장, 축구장 등)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%~90%에서 10%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 〈주요요지〉 			
	○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(풋살구장 등, 규칙으로 정함)으로 운영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정(안 제11조제2항제11호)			
추진경과	○ 2023. 5.30. 김춘곤 의원 발의 - (찬성)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 의원 등(44명)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
	○ 시립체육시설 중 풋살경기장·다목적구장 등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은 실제 이용을 위한 사전예약이 시설별로 30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음			
 쟁점사항	○ 현 조례규정은 반환기준이 60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최대 90%까지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함			
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조례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관형태를 감안, 대규모 공연 , 경기 등의 행사대관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구분하였으며,			
	○ 각 시설별 의견을 반영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적정한 반환수수료를 규정 하고, 적용시설은 행정청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여 시설이 변경될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에 동의		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 팀장	주소연(☎ 2133-2677) 담	당 김병모(☎2133-2678)	

의안번호 080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
발 의	이성배 의원 (도시안전건설위원회)	2023.5.3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	〈제안이유〉			
	○ 다수의 경기·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,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			
	〈주요요지〉			
 주요내용		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		
	으로서 <u>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</u>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 (안 제10조의1바목 신설)			
	○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	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	-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	
		<u>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</u>		
	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호사목 신설)			
추진경과	○ 2023. 5.30. 이성배 의원 발의 - (찬성)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 의원 등(49명)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O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
	○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 행사와 경기 시 소음			
쟁점사항 (의회 동 향,	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원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○ 다만, 피해의 범위와 규모는 시설별 조사를 통해 확정이 필요 한바, 조례개			
문제점 등)	전인, 피에의 임기와 규모는 시설을 보지를 등에 복용이 필요한다. 소네게 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감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, 시장이 피해 및 지원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동의		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 팀장	주소연(☎ 2133-2677) 담	당 김병모(☎2133-2678)	

의안번호 085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	
발 의	강석주 의원 (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)	2023.5.30.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	 〈제안이유〉 ○ 우리나라 '22년 합계 출산율은 0.78, 서울은 0.59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, 다자녀 양육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			
주요내용	 〈주요요지〉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) ○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(안제10조) 			
추진경과	○ 2023. 5.30. 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 - (발의자)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 의원 등 30명	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 ○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 - 기존의 "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"를 "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"으로 개정 - 입장료 50% 감면을 면제로 혜택 확대 			
	○ 이는 4명보다 많은 다둥이 가족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, 다자녀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 시 부담을 줄여 공공의 영역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			
대응방안	○ 해당 없음			
담당부서	체육정책과 팀장	주소연(☎ 2133-2677) 담	당 김병모(☎2133-2678)	